

## 대 리 점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생산, 판매, 공급하는 제품(이하 "상품" 이라 한다)을 을이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갑, 을 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갑은 을을 갑이 판매하는 상품의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상품의 외양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없다.
  - ③ 을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전 시에도 이에 준한다.
- 제2조 (상품종류, 규격) ① 을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의 사양에 의해 갑이 결정한다.
  - ② 갑이 공급하는 물품의 종류 또는 규격에 관한 사양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 ③ 을은 갑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제3조(상품의 수량) 상품의 수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정하되 을이 갑의 물품을 주문할 시에는 갑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주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주문에 따라 그때의 공급능력, 영업상황, 기타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을과 협의하여 공급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상품의 운송, 인도, 검수) ① 상품의 인도는 을의 영업장소에서 하며 이에 따른 운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 ② 을이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았을 때에는 인도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즉시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당시 수량 또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검수 즉시 수량 및 품질에 대한 하자를 을이 통보하지 아니

한 경우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출고된 상품에 대한 반품은 WARRANTY규정 이외의 경우에는 인정<sup>\$</sup>, 않는다.
- ④ 을은 상품 인수 시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은 갑이 정하고, 을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갑이 별도로 표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대금결제) ① 상품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 ② 을이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갑은 지급기일로부터 0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품대금에 대한 갑을 간의 결제방법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승낙이 있을 경우 을은 약속어음으로지급할 수 있으나 물품인도 일로부터 지급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전항의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의 경우 그 금액이 현금으로 결제 되었을 때대금이 지급완료된 것으로 한다.
- ⑤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상품대금과 기타 채무의 변제를 연체할 경우 지급일자로부터 익일 00시까지 연장하며, 만일 지불되지 않을 시에는 담보에서 물품대금을 공제한다.
- ⑥ 을은 미결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보가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의무 양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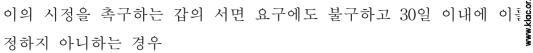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한 채권, 채무 기타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 ② 을은 갑과 을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비용으로 일천만원(₩10,000,000)을 대리점 계약 시 갑에게 현금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은 소멸됨을 인지한다.
  - ③ 갑은 공동마케팅 및 홍보비용 일천만원(₩10,000,000)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결산, 공고한다.
  - ④ 갑은 을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 제9조(지도육성 및 자료제공) ① 갑은 수시 을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지도 육 성하고 상품판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② 을은 항시 상품수불 및 판매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영업상황, 기타 생 무현황을 갑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갑, 을 양자는 상호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인지한 상대방의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 기밀을 본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상호 기밀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본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제10조(After Service) ①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제품판매 후 12개월로 하며 무상보증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갑이 제정한 별도의 WARRANTY규정에 준거한다.
  - ② 을은 소비자로부터 A/S를 요구받았을 경우 성실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기술지도 및 A/S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 ③ 을은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품을 교환하고 갑에게 통보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갑은 을의 A/S 소요제기 시 갑의 승인 하에 별도의 WARRANTY 규정에 따라 을에게 보상한다.
- 제11조(공고 및 전시) ① 갑은 을의 상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1. 을의 영업장 내/외부 장치, 간판 및 상품진열
  - 2.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갑이 판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을이 단독 또는 연합광고를 하거나 갑 이외의 타인과의 공동광고를 할 경우 갑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해지)

-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거나, 파산 또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3. 을이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을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4. 을의 갑과의 거래실적이 월별 최소판매량을 2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 5. 을이 계약내용의 이행거절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6. 을이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 본 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고



- 7. 기타 을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향도하거나, 을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갑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갑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보완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8. 을이 갑의 권장가격을 현저히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였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 9. 을의 관할지역외 타 대리점의 영역권을 갑과 사전협의 없이 침범하였을 경우
- ② 전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액 전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갑, 을 간의 업무를 종결시킨다. 본 계약해지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 ③ 기타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을은 제8조 ①항에 의거, 담보로 제공된 금액이 소멸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된 담보가액이 재입금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계약은 중도 해지된다.
- ⑤ 여하한 사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정보 및 자료(기밀사항, 기술자료 및 판매자료 등을 포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나 갑의 상품과 관련한 모든 상표, 상호 및 로고의 전시 사용을 중지하고, 더 이상 갑의 대리점으로 자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이에 상응한 손실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방법은 갑에게 제공한 담보로 우선 조치키로 한다.
-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단, 기 간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별도의 서면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한 만료일 익일부터 1년간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갑의 사업장 소재 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6조(기타사항) 본 계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 시는 상호 협의하고 계속 불일 치 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 위 계약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소지한다.



## 20ㅇㅇ년 ㅇ월 ㅇ일

| 갑  | 주 | 소 |   |         |   |                  |  |
|----|---|---|---|---------|---|------------------|--|
|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    | 또 | 는 | 인 | 또 는     | _ | 전<br>화<br>번<br>호 |  |
|    | 상 |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이미 | 주 | 소 |   |         |   |                  |  |
|    | 성 |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  |
|    | 또 | 는 | 인 | 또 는     | _ | 선 화 번 호          |  |
|    | 상 |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빈 오              |  |